

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42,286,348	19,268,590
일반회계	571,009,268	17,130,278
특별회계	71,277,080	2,138,312
공기업특별회계	41,198,839	1,235,965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41,198,839	1,235,965
기타특별회계	30,078,241	902,347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18,956,493	568,69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,519,590	195,588
농공지구조성사업	2,364,845	70,945
의료급여기금운영	1,529,811	45,894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07,502	21,22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018,887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3,691,13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,268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 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하고, 미 집행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하며, 이는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.